
2025년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유공자 포상 안내

2025. 5.



한국에너지공단
KOREA ENERGY AGENCY

1

포상목적

- 산업·전환부문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도가 큰 유공자 발굴 및 포상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참여 의지 고취

2

포상개요

- 포상대상
 - 산업·전환부문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바가 큰 개인 및 단체

□ 훈격 및 수량*

-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10개,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표창 13개

포상 분야		수량	포상 대상
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(공공포함)	장관 표창	10	· (개인) 표창 추천일 기준, 수공기간 3년 이상 · (단체)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
	이사장 표창	13	· (개인) 2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· (단체) 2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단체
합 계		23	

* 표창별 개인/단체 포상 비율은 접수 건수, 평가 결과 등에 따라 결정

□ 시상식

- 표창 시상식은 2025년 한국에너지대상* 행사를 통해 추진 예정
- * '25. 11. 17(월), 더 플라자 호텔 서울 (예정)

3

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포상기준

□ 기본 원칙

- 「2024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」(행정안전부) 및 「2025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」에서 정한 포상기준을 준수
- 「2025년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유공자 포상계획(안)」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「2024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」에 준함

□ 자격 기준

- (개인 표창) 표창 추천일 기준, 수공기간 3년 이상
- (단체 표창)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

□ 추천 제한

① 개인 표창

- 1) 표창추천일 기준, 직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
- 2)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(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)
 - * 다만,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
- 3)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
 - 가)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의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
 - *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(동일사건번호)는 1회로 처리

나)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포함)의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

* 다만,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

4)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“의견거절”, “부적정”, “한정”인 상장 회사의 대표자와 임원

5)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(개인)

가)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「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」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

나)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「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」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

*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

6)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

7)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
8)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

*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포함(정부포상지침 중 2.일반국민 포상과 동일)

② 단체 표창

- 1) 표창추천일 기준, 최근 2년 이내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
- 2)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
- 3)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(민간단체에만 적용)
 - * 다만,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
- 4)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(민간단체에만 적용)
 - 가)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)
 - *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(동일사건번호)는 1회로 처리
 - 나)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)
 - * 다만,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
- 5)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“의견거절”, “부적정”, “한정”인 상장회사
- 6) 「근로기준법」 등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(단체)
 - 가)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「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」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

나)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「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」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

*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

7)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
8) 기타 사회적 물의

※ 산재명단공표, 불공정행위, 임금체불사업주 조회기관

· 산재명단공표: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(☎ 044 - 202 - 7693)

* [고용부 홈페이지\(www.moel.go.kr\)](http://www.moel.go.kr) → 정보공개 → 사전정보 공표 목록 → 산재예방/산재보상 →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(pdf 파일)를 참고해 자체 확인

· 불공정행위: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(☎ 044 - 200 - 4127)

* [공정위 홈페이지\(www.ftc.go.kr\)](http://www.ftc.go.kr) → 심결/법령 → 법위반사실조회 → 사업장명 검색

· 임금체불사업주: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(☎ 044 - 202 - 7537)

* [고용부 홈페이지\(www.moel.go.kr\)](http://www.moel.go.kr) → 정보공개 →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→ 사업장명 또는 성명 검색

※ 회계법인의 감사의견

· 최근 1년 이내 감사보고서 중 “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” 부분 확인

□ 표창 취소

- 추천제한자 등 표창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표창을 받거나 공적이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
- 공적조서의 공적사항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
-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등

4

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상 포상기준

□ 기본 원칙

- 「대외포상 업무지침」(한국에너지공단, '22.9)에서 정한 포상 기준을 준수
- 「2025년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유공자 포상계획(안)」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「2024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」에 준함

□ 자격 기준

- (개인 표창) 2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
- (단체 표창) 2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단체

□ 포상 제한

- 2년 이내에 동일한 공적으로 표창을 받은 자
- 기타 제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기준에 준하여 적용함

□ 표창 취소

- 추천제한자 등 표창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표창을 받거나 공적이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
- 공적조서의 공적사항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
-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이사장 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등

5

접수 및 심사

□ 접수계획

○ 접수기간 : 연중

- 단, 2025년 8월 15일(금)까지 접수완료된 신청분*에 한해 '2025년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' 포상 후보자로 심사

* 2배수 이상 미접수 시 1회 연장(14일, ~8.29까지)

○ 접수방법 : 한국에너지대상 홈페이지*에서 추천(신청) 접수

- * 한국에너지대상(<http://www.energyaward.energy.or.kr>) →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
- 접수기한 내 상기 홈페이지를 통해 '제출완료'한 건에 한해 인정

※ 작성 종이거나 임시저장 상태로 등록되거나 우편, 팩스, 이메일, 방문 등 기타 수단으로 제출한 건은 인정하지 않음

○ 안내방법

- 한국에너지공단, 배출권거래제 및 목표관리제 등 관련 홈페이지 안내
-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 관련 기업, 관계 기관 및 지자체 등 홍보

○ 제출 서류

- 추천(신청)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,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및 관련 증빙서류 등 각 1부

◆ 파일명 작성방식

- (개인) 파일명 예시 ("한국에너지"의 포상 추천(신청) 대상자가 "홍길동"의 경우)
추천(신청)서_홍길동(한국에너지).hwp, 증빙서류_홍길동(한국에너지).hwp

○ 문의처

- 한국에너지공단 기후정책실
- 전화 : 052-920-0565

□ 심사 방법

○ (심사 근거)

- 2024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
- 2025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

○ (심사 절차) 심사위원회를 통해 유공 적격자 선발

◆ 예비심사
○ 목 적 : 예비심사를 통해 포상 규모의 2배수 이내로 공적서 선별
○ 심사위원 : 외부 전문가로 구성(5인 이내)
○ 심사방법 : 평가 시 별도 세부계획 수립 후 수행
◆ 종합심사
○ 목 적 : 포상 규모의 1.5배수 이내로 포상 추천 순위 확정
○ 심사위원 : 외부 전문가로 구성(7인 이내)
○ 심사방법 : 평가 시 별도 세부계획 수립 후 수행
◆ 현장조사
○ 공적내용의 사실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시행
※ 예비심사 및 현장조사는 필요시 추진

○ (평가 내용)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성과, 기여도, 확산 노력 등에 대해 공적서 평가 실시

평가 내용	평가 세부내용	배 점
기후변화대응 및 온실가스감축 성과	활동내용 및 수공기간 등	50
기후변화대응 및 온실가스감축 기술 및 정책 기여도	적정성 및 개발 노력도 등	30
기후변화대응 및 온실가스감축 홍보·확산(전파)	인식제고 홍보 및 확산 노력 등	20
기후변화대응 및 온실가스감축 관련 가점	[개인] 중소기업 경력사항 [단체] 중소기업 해당여부	[개인] (1점) 3~5년 (2점) 6~10년 (3점) 11년 이상 [단체] (3점) 중소기업 해당

5

추진절차(안)



* 위 추진일정은 공적서류 접수, 검토 및 시상식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- [별 첨]
1. 추천(신청)서 1부.
 2. 추천(신청)서 작성요령 1부.
 3.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.
 4. 이사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.
 5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. 끝.

과거 포상기록 (훈장·포장·표창별로 기록)

년 월 일	내 용

주요 학력 및 경력

년 월 일	내 용

공 적 내 용

--

공 적 내 용 (계속)

* 공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(3자 검증 실적, 사진, 내부결재문 등)는 별도첨부

추가 기재사항

사업자등록번호 (10자리)	
법인등록번호 (13자리)	
산재보험관리번호 (11자리)	

* 산재율 조회 및 공정거래 위반사실 조회 시 필요

추천(신청)서 작성요령

□ 공통 사항

- 한국에너지대상 홈페이지(<http://www.energyaward.energy.or.kr>)를 통해 추천(신청) 접수
 - 접수 시, 제출서류 원본에 서명 후 첨부파일로 등록
 - * 추천(신청)서, 공적조서, 개인정보수집·이용 동의서 및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등

□ 세부 사항

- 공적요지는 공적사항의 주요내용을 100자 내외로 축약하여 기재
- 학력(경력)란은 최종학력(경력)을 기준으로 2개 이상 기재
- 과거 포상기록은 최근 5년 이내(2020.5월 이후) 장관표창 이상(훈·포장, 대통령, 국무총리, 장관)에 한해 기재
- 공적내용은 2022.1월 ~ 추천(신청)서 제출일까지의 공적을 적용
- 공적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적으며, 가급적 일반인들이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2,000자 내외로 기재(부족 시 별지이용)
 - * 공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별도 첨부
- 사업자 등록번호, 법인등록번호, 산재보험관리번호 기재
 - * 산재율 조회 및 공정거래 위반사실 조회 시 필요

[별첨 3]

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

장관표창 후보자

성명			
소속(주소)		직위(급)	

위 본인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,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.

1. 본인은 장관표창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,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장관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.

※ 특히, 아래의 '신고의무 사항'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장관표창이 수여된 경우 「상훈법」 제8조 제1호의 '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'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취소될 수 있음

▪ **신고의무 사항**

-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
- 경찰·검찰의 조사(수사)를 받게 된 경우
-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
-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
-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(공무원만 해당)

2.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장관표창 대상자가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.

2025. . .

성명

(서명)

[별첨 4]

이사장 표창에 대한 동의서

□ 이사장표창 후보자

성명			
소속(주소)		직위(급)	

위 본인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표창 후보자로 선정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,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.

1. 본인은 이사장표창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,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장관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.

※ 특히, 아래의 '신고의무 사항'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장관표창이 수여된 경우 「상훈법」 제8조 제1호의 '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'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취소될 수 있음

▪ 신고의무 사항

-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
- 경찰·검찰의 조사(수사)를 받게 된 경우
-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
-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
-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(공무원만 해당)

2. 한국에너지공단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이사장표창 대상자가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.

2025. . .

성명 (서명)

[별첨 5]
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
< 개인정보 제공 동의 >

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장관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1. 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) 장관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 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, 공개 검증 및 공적심사, 장관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
2. (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)
 - 개인정보 항목 : 성명(단체명, 한자), 주소, 직업, 소속, 직위 및 등급(직급,계급), 근무기간, 공적요지, 주요 학력 및 경력, 군번(군인의 경우), 국적, 과거포상
 - 민감정보 항목 : 징계, 형벌 (해당 시에 수집·이용)
3. (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) 표창기록부는 영구,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

위와 같이 2025. . . 일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

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합니다.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습니다.	성명	(서명)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	------

위와 같이 2025. . . 일 민감정보(해당 시)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

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합니다.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습니다.	성명	(서명)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	------

< 고유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) 제공 동의 >

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장관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1. 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) 장관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, 공개 검증 및 공적심사, 장관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, 상훈수여증명서 발급
2. (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 항목) 주민등록번호
3. (수집근거) 정부 표창 규정 제27조(대통령령 제31380호)
4. (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) 표창기록부는 영구,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

위와 같이 2025. . . 일 고유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)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

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합니다.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습니다.	성명	(서명)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	------